

# 2017년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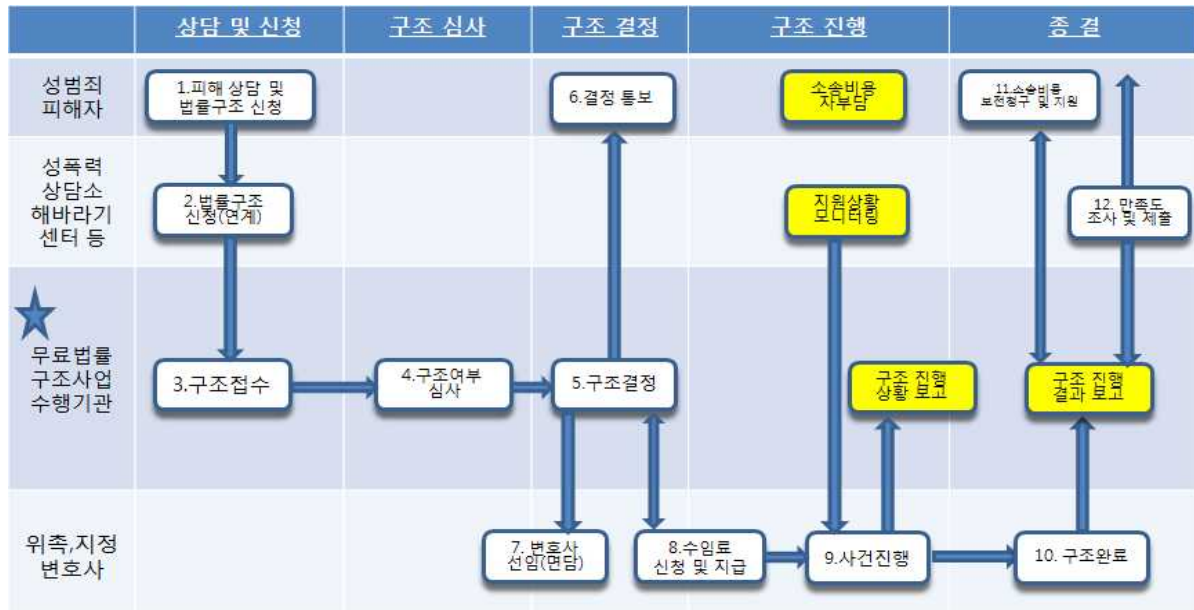
## ◆사업개요

성폭력 피해자는 법률지식의 부족 및 무자력, 소송에 따른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. 이들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신장하고자 한다.

## ◆사업대상

- ▶ 사업지역: 전국
- ▶ 구조대상: 성폭력 피해자(국내거주 외국인 피해자 포함)
- ▶ 구조대상 사건: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·가사, 형사 사건 등

## ◆진행흐름도



## ◆신청서류

1. 무료법률구조신청서[제1호 서식]
2. 이용자고지확인동의서[제3호 서식]
3. 성폭력 피해 입증 자료 중 택1
  - ① 성폭력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[제2호 서식] →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기본 서류로 포함
  - ② 성폭력에 의한 피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
  - ③ 고소장, 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
  - ④ 판결문 및 불기소이유서

※ 수행기관별 별도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.

## ◆선정 기준

- ▶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
- ▶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및 권리구제 능력, 방어 가능성 정도

- ▶ 기타 본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취지에 부합 여부 등
- ▶ 단,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우선 구조할 수 있습니다.
  -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경우
  - ②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인 경우
  - ③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
  - ④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등

#### ◆법률구조지원비용 안내

- ▶ 변호사 수임료는 본안사건은 건당 100만원, 신청사건은 건당 40만원으로 합니다.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 당 2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▶ 소송비용(인지대, 송달료 등)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, 그 이상의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자부담하도록 합니다. 민·가사구조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에 대한 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▶ 외국인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통역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통역비 역시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.
- ▶ 법률구조지원비용은 1인당 4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, 시설관계자,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
#### ◆법률구조지원 시 알아둬야 할 사항

- ▶ 최초 신청 후 심급이 변경됨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 형사의 경우 수사에서 1심, 항소심, 상고심으로 나뉘며, 민사·가사소송 역시 심급별로 지원됩니다.
- ▶ 변호사는 구조비용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, 소송중의 합의에 대해서도 따로 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. 금품을 요구받은 경우 수행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형사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때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(2017년 운영지침 P168 참고)
- ▶ 신청인이 변호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교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, 교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. 변호사의 수임료는 교체 사유 및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니다.
- ▶ 자부담했던 소송비용 청구 시 청구서[제6호 서식]와 증빙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. 해당 사업은 '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'을 사용하고 있어 입출금 내역이 공개됩니다. 따라서 피해자가 자부담했던 소송비용은 반드시 피해자 개인이 아닌 지원 변호사 또는 지원기관명의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사건이 종결되면 신청인은 무료법률구조사업 만족도조사[제9호 서식]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. (주소: [06266]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9길 31, 102호)